



지방자치정채브리피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예산 분류체계 개편의 필요성

지방예산분류체계는 중앙정부(국가예산)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준용

• 이에 해당 지자체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을 담아내지 못하고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도 될 수 없는 구조

지방사무의 예산편성은 사업계획별 분류를 통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단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구성

•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 내에서 지자체별 예산구조화 기법의 차이로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불가한 구조

현재의 예산분류체계는 지자체별로 사무의 세부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

- 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과거 품목별 예산분류 시에는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과 같은 사무가 세항 단위로 관리되어 지자체 유형별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손쉽게 산출
-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였으나 현재 예산분류체계는 2008년도에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환되면서 지자체의 부문 이하의 단위사업이 일관성 없게 구조화되어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난해
-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예산규모나 수준 등에 대해 파악하기 힘들고 이를 파악하려면 별도의 인력, 시간, 노력을 들여야만 가능한 상황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의 세출계획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예산분류체계의 개선 필요성 제기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분석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류체계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구성

• 분야 중 030 통일 · 외교, 040 국방, 130 통신은 중앙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는 기능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분류체계 상에는 부재

부문 중 012 국정운영, 015 정부자원관리, 021 법원및헌재, 022 법무및검찰, 024 해경, 054 교육일반, 084 공적연금, 092 건강보험, 122 철도 등은 국가예산에만 있고 지방에는 없는 세출항목

• 반대로, 지방예산분류에만 있고 국가예산분류에서는 없는 것이 026 소방, 071 상하수도 · 수질~076 환경보호 일반 부문, 900 기타 분야

중앙과 지방의 분야-부문명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분야 또는 부문명이 상이

- 100번 분야가 국가예산에서는 농림수산, 지방예산에서는 농림해양수산으로 쓰이고, 103번 부문은 국가는 수산·어촌, 지방은 해양수산·어촌으로, 120번 분야 또한 국가는 교통 및 물류, 지방예산에서는 수송 및 교통으로 명시
- 특히. 지방의 경우 900 기타 분야가 하나 더 존재하지만 국가예산에서는 900번이 부재
- 지방예산에서 900 기타분야의 예산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예의주시할 부분

이처럼 지방의 예산분류체계는 중앙의 체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보니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한 재정기록 으로써의 역할에 한계

- 예) 지자체 기능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서와 e-호조 기록이 분야 아래 부문(예: 기초생활보장, 취약 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까지만 편성되어 관리
 - 해당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

지자체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단위사업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명을 통한 통계산출이 불가

• 다양한 정책들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단위사업이 일관성 없게 구조화되어 각종 자료의 산출이 매우 난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환경을 예산분류체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방예산 분류체계 분석결과 개선해야 될 점

지방예산 분류체계의 개편방향

품목별 예산제도가 성과관리면에서 미흡하다는 단점 극복을 위해 도입된 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

- 지방예산이 품목별로 편성되던 때에는 세항목(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육지원 등)으로 관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구조화 일관성 가능
- 품목별 예산제도 분류 방식의 장점과 사업별 예산제도 분류방식의 접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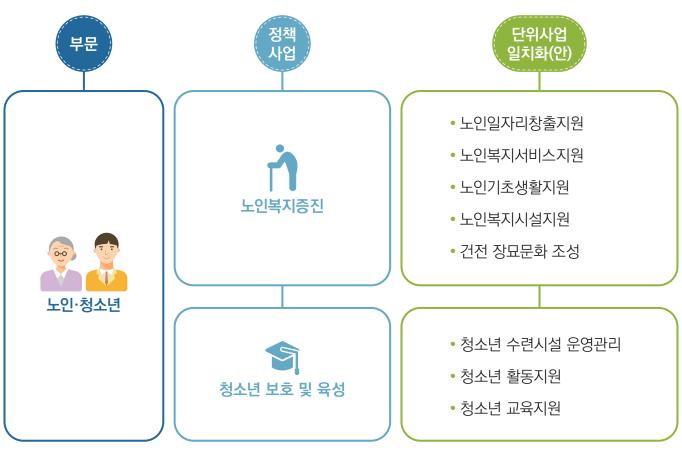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야 및 부문의 경우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

- 정책사업 단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 검토 필요
- 예) 사회복지분야 노인·청소년 부문의 경우 예산편성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별 분류 기준인 노인·청소년 부문 분류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부문 하위의 정책사업의 경우 부서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이를 정책사업 아래 수준인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사업명 일치화 필요성이 제기

단위사업 수준에서의 일치화된 사업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

• 지방교부세 수요산정항목과 기존 품목별 분류 방식에서의 장-관-항 항목, 사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분류에 있어서 공통되는 항목을 활용하여 단위사업 분류 개선안을 제시

【 〈표〉 노인·청소년 부문 사업별 예산편성 개선 방안(안)



출처: 저자작성

- ▶ 참고자료: 김성주·윤태섭(2017),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내용문의 :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33-769-9874, sjkim@krila.re.kr)

지난호 보기 : 국가 및 지역연계를 통한 미세먼지 대응방안 구축 필요(박승규 연구위원) 원문보기 🔊



📄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kril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